

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3. 제안이유

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('97. 1. 1시행)됨에 따라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위원장, 간사의 직명을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 도지편찬위원회 위원장, 간사의 직명변경
 - 위원장 : 부지사 → 행정부지사
 - 간 사 : 문화예술과장 → 문화체육과장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도지의 편찬·발간 및 자료의 조사연구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간사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도지편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“부지사”에서 “행정부지사”로 간사와 서기에 있어서 간사를 “문화예술과장”에서 “문화체육과장”으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

본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첨 부

- 충청북도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